

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: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4월 12일, 임기진 의원 외 10명

나. 회부일자: 2024년 4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4년 4월 24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: 임기진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,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일

수를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함(안 제18조제6항).

-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1일에서 2일로 확대함(안 제18조제7항).
-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8조제11항).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경형)

가. 제안취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 재직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,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(특별휴가) 제6항제3호에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종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, 제7항에서는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종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, 제11항을 신설하여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총 장기재직휴가를 종전 50일에서 55일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,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종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,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

육휴가를 신설하여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.

-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,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,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에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